

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6년 2월 16일

- 회부일자 : 1996년 2월 16일

3. 개정이유

1991년도 본 조례 제정 당시 정해진 불법주차 견인료 (소중형차 기준 20,000원)는 현행 견인에 따른 비용과 많은 차이로 인하여 청주시를 제외한 타 시·군은 견인 업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여 민간업체가 견인업무대행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주차 질서 확립 효과를 거양하고 기타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코자 함.

4. 주요골자

가. 견인료 인상

- 별표 제1호중 기본요금 2.5톤 미만 "20,000원"을 "30,000원"으로

- 2.5톤 이상 6.5톤 미만 "25,000원"을 "35,000원"으로

- 6.5톤 이상 "40,000원"을 "50,000원"으로 인상

나. 불명확한 용어정비

- 별표 제1호중 "기본요금(편도 5km까지)"를 "기본요금(10km까지)"로 하고

"추가요금(매 km증가시)"을 "추가요금(매 1km증가시)"로 하며

- 별표 제2호중 "1회 주차권"을 삭제함

5. 검토의견

현행 불법주차 견인료는 1991년도 조례제정시 정해진 금액으로 그동안 물가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할때 견인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청주시를 제외한 타 시·군은 견인업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견인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여 민간업체가 견인업무 대행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서 효율적인 주차질서 관리 업무에 민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인 바

- 본 조례 별표 제1호의 기본요금 2.5톤 미만 20,000원, 2.5톤 이상 6.5톤 미만 25,000원, 6.5톤 이상 40,000원을 정액적으로 각각 10,000원을 인상하여 30,000원, 35,000원, 50,000원으로 하였으며
- 추가요금 편도 5km까지를 10km까지로, 추가요금 매 km 증가시를 매 1km 증가시로
- 별표 제2호중 1회 주차권을 삭제함으로써 용어를 명확히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